

특 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15. 10. .

국무위원 윤 상 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위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을 완화하며, 규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특허표시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포괄위임등록 신청 서식 개선, 심판 관련 증명신청 및 심판청구 서식 개선 등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5. 00. ~ 00.)

3) 행정규제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를 “포괄위임장”으로 한다.

제111조 중 “법 제201조제4항”을 “법 제201조제5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본문 중 “및 심결문송달증명신청”을 “및 심결문(결정문)송달증명신청”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제2호 중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을 “5년”으로, “자 1인 이상을”을 “1인 이상의 책임자를”로 한다.

제1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표시를 물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는 그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 또는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1)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헌 또는		업무 정지	차경 취소	지정 취소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2)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력의 수가 부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3)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이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4) 영 제8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다. 영 제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 2 제1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앞쪽)

【구 분】 포괄위임등록 신청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포괄위임등록 철회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변경,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 설명확인】~~

~~위 대리인으로부터 포괄위임의 중요사항(위임범위, 기간, 철회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설명일자 . . .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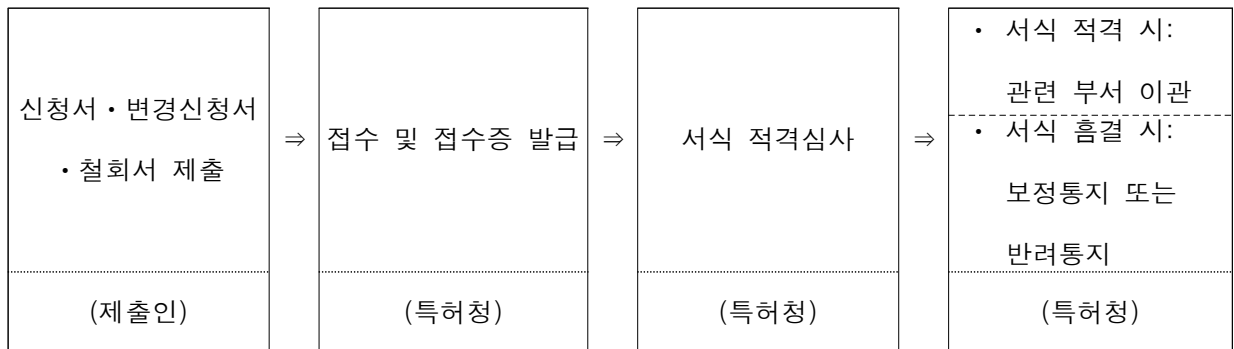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1. 구분 및 관련 규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포괄위임등록 신청	제출인이 신규로 포괄위임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
포괄위임등록 철회	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을 철회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

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 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 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복대리인의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의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적습니다.

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마.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등록(변경, 철회)대상 대리인】란

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의 경우

신규로 포괄위임하려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선임하려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모두 적습니다.

[예 1]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예 2]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포괄위임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그 대상이 되는 기존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코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포괄위임사항 변경의 대상이 되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모두 적습니다.

[예 1]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대리인의 포괄위임등록번호)

[예 2]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포괄위임등록 철회의 경우

철회하려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코드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철회할 대상이 복대리인인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 【선임대리인】란을 만들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을 적습니다. 철회대상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5. 【포괄위임 설명확인】란

~~포괄위임을 받으려는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과 관련된 위임범위, 위임기간, 철회 방법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는 해당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경우 자필로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6.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포괄위임장 1통(포괄위임등록신청 및 포괄위임사항 변경 시에 한정하되, 포괄위임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포괄위임사항을 적음)
-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포괄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포괄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포괄위임장을 제외한 첨부서류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포괄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이 위임사항[코드번호(A01, A02, B01...)]을 적고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을 받으려는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과 관련된 위임범위, 위임기간, 철회방법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는 해당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경우 포괄위임장에 다음과 같이 【포괄위임 설명확인】란을 만들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다만,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괄위임장

○○○(출원인코드: 0-0000-000000-0)은 변리사 ○○○(대리인코드: 0-0000-000000-0), 변리사 ○○○(대리인코드: 0-0000-000000-0), 변리사 ○○○(대리인코드: 0-0000-000000-0), ...를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 다음 -

- A01.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 A02. 특허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A04. 특허출원의 포기
- A05. 특허출원의 취하
- A06. 특허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 A07. 특허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A08.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 A09. 특허권의 포기
- A10. 특허출원에 기초한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주장
- A11. 특허출원에 기초한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취하
- A12. 특허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A13.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A15.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A16.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A18.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A19.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의 청구
- A20.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의 제공
- A21.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 A22.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
- A23.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A24. 특허이의신청의 취하
- A25. 특허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 A26. 특허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 A27. 특허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A28. 특허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A29.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

- B0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 B02. 실용신안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B0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
- B0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취하
- B06.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 B07.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B08. 실용신안권의 포기
- B09.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
- B10.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취하
- B1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B14.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B17.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B19.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 B21.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
- B22.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
- B23.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
- B24.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관련 모든 절차
- B25.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B26.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취하
- B27.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 B28.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 B29.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B30. 실용신안등록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B31.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
- B3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B33.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B34.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의 청구
- B35. 타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 C01.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 C02. 디자인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C04.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
- C05. 디자인등록출원의 취하
- C06.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 C07.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C08. 디자인권의 포기
- C09.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C1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C11.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C12.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C13.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C14.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취하
- C15.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C16.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55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 C17.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 C18. 디자인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C19. 디자인등록이의신청의 취하
- C20.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 C21.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 C22.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C23. 디자인등록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D0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 D02. 상표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D03.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 D04. 상표등록출원의 취하
- D05.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청구의 취하
- D06.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D07. 상표권의 포기
- D08.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D09.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D10.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D1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D12.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취하
- D13.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 D1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
- D15.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D16.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취하
- D17.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 D18.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관련 모든 절차
- D19.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D20.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의 취하
- D21. 상표등록출원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 D22. 상표등록출원이의신청의 취하
- D23.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 D24.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심판청구의 취하
- D25.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신청의 취하
- D26.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 D27.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제외),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 제외) 상호간의 변경출원

- E00. 상표의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관련된 본국관청에 관한 모든 절차

F00.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

20XX. X. X.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포괄위임 설명 확인】

위 대리인으로부터 포괄위임의 중요사항(위임범위, 기간, 철회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설명일자 . . . 위임자 (서명 또는 인)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시[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시,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증명(접근코드부여)신청서

(앞쪽)

- 【신청구분】 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결정문)등본송달증명
 비밀디자인등록증명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신청대상】)

(【신청부수】)

(【신청이유(출원예정국가)】)

【수령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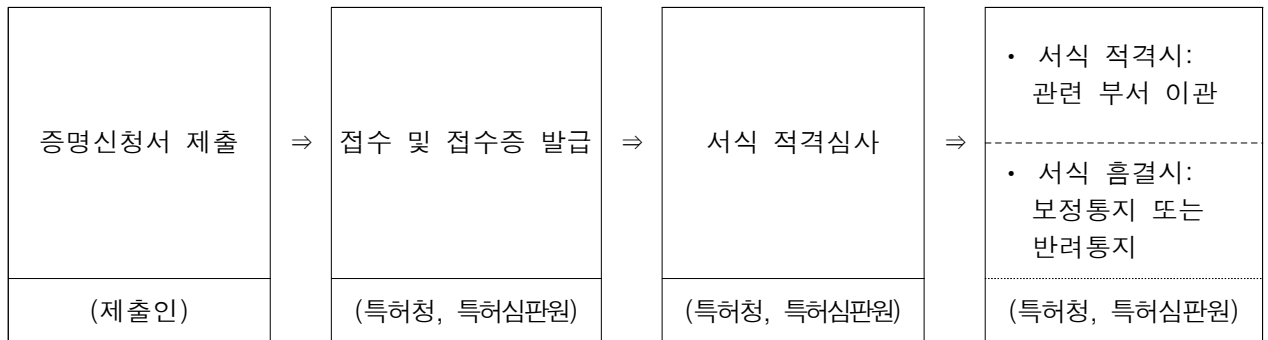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1.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신청구분	관련 규정
미생물분양자격증명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3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6조
출원사실증명	「특허법」 제21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및 「상표법」 제87조
우선권증명	「특허법」 제21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및 「상표법」 제87조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결정문)등본송달증명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206조 및 「상표법」 제87조
비밀디자인등록증명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제2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 여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 (4)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 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특허(등록)권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신청대상의 표시】란

가. 이 난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특허청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KR-2014-3123456

(1) 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에 있어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결정문)등본송달증명에 있어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심판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심판번호】

(3)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란 및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려는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란의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항목을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예 2]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234567-8901234

[예 3]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234567-8901234

※ 주민등록번호 공개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는 ‘*’로 처리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교부합니다.
- ② 등록원부 교부 신청 시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란의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에 등록권리자(말소된 등록권리자를 포함합니다)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며,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해당 특허(등록)권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나. 【신청대상】란

- (1)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대상】란의 다음 행에 【분양대상미생물 기탁기관명】 , 【분양대상미생물 수탁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기탁기관명, 수탁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청대상】

【분양대상미생물 기탁기관명】

【분양대상미생물 수탁번호】

(2)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결정문)등본송달증명,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대상】** 란을 삭제합니다.

(3)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등록원부 등본, 출원서(도면 포함)”라고 적습니다.

다. **【신청부수】** 란에는 필요한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2건 이상의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각에 대해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부수】** 란을 삭제합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부수】 1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부수】 1

5. **【신청이유(출원예정국가)】** 란

가.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이유를 적고, **【첨부서류】** 란에 이를 소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함께 제출합니다.

나. 우선권증명의 경우에는 해외에 출원할 국가명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다. 출원사실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결정문)등본송달증명,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용”, “법원제출용” 등과 같이 증명신청서의 용도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 란

가.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등록원부 사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 다만, 신청한 서류 중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류는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출원서류에 한정하며, 심판관련서류는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제출된 등록원부 기록관련서류도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7.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난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

-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특허청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심판청구서

(앞쪽)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의 표시】

【심판의 종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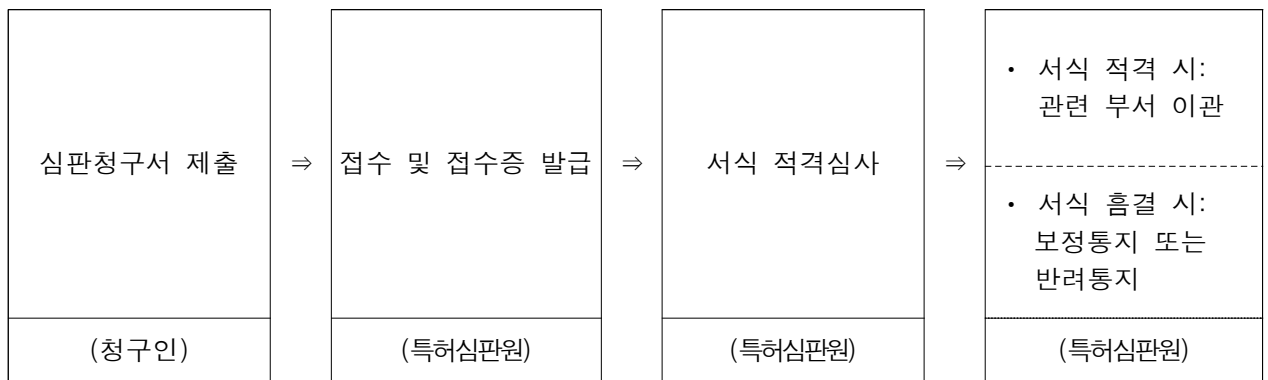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1. 심판구분 및 관련 규정

심판구분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
무효심판	특허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법」 제71조),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 및 상품분류 전환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의2)
거절결정 등 불복심판	특허거절결정·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법률 제7554호 「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법률 제7555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
정정심판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정정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특허법」 제137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및 「상표법」 제75조)
취소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 및 사용권등록 취소심판(「상표법」 제74조)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재심	재심(「특허법」 제178조, 제179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8조 및 「상표법」 제83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청구인(피청구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 (3)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 (1) 【청구인】(또는 【피청구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청구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청구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가. 【심판의 종류】 및 【출원번호 등】란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 및 심판의 종류에 따른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 중 【출원번호 등】란은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변경하여 국제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한 것만 해당합니다)의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1]

심판 구분	심판의 종류	관련 규정	번호종류
당	특허 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특허번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특허번호】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법」 제31조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등록번호】
	상표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1조	【등록번호】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	【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2조의2	【등록번호】
	정정 무효심판	「특허법」 제137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또는 「상표법」 제75조	【특허(등록)번호】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3조	【등록번호】
	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4조	【등록번호】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특허법」 제138조 및 제140조, 「실용신안법」 제32조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및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원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3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특허권 연장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3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지정상품 등 추가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7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보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19조 또는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취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특허취소결정 불복심판	법률 제7871호 「특허법」 부칙 제7조	【특허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부칙 제4조	【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기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	법률 제7555호 「실용신안법」 제54의2	【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정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재심	「특허법」 제178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8조 또는 「상표법」 제83조	【재심의 종류】 【심판번호】 【재심사유를 안 날】

※ 참고: 번호별 구성체계

번호종류	번호체계	기재례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리) - 일련번호(2자리)	
국제등록번호(상표)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국제등록번호(디자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번호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예 2]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나.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의 종류】 란에는 재심판 대상이 되는 초심 심판의 종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재심의 종류】 무효심판

4. 【청구의 취지】 란

이 난에는 해당 심판청구의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2]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000000호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디자인등록 제0000000-0000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4]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특허출원 00-0000-0000000호는 특허결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00-0000-0000000-M000호는 디자인등록결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1] 서비스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서비스표등록출원 00-0000-0000000호는 서비스표등록결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자동차 연료 감지장치”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등산화”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8] 특허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5. 【청구의 이유】 란

- 가. **【청구의 이유】** 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필요하면 별지에 적어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 나.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청구의 이유에 적고, 필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라. 관련된 특허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심판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이유에 해당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우선심판신청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마.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 전과 후에 대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합니다.

6. 【증거방법】 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적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 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심판청구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료】** 란에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류의 개수와 해당하는 심판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심판청구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합니다) 및 필요한 도면(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도면,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 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3)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MP3, WAV 또는 WMA에 의한 파일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파일의 크기는 3 Megabyte 이하여야 합니다)
-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밀폐용기 1통 또는 향패치 10매(냄새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30 ml 이상의 액상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1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 mg 이상 도포한 향패치 10매를 제출합니다)
- (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

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존번호: 0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보유할 것

3.·4. (생략)

② ~ ⑤ (생략)

제121조(특허표시)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인 이상의 책
입자를 ----

3.·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특허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표시를 물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는 그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고,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 또는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3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243